

낙시어선안전운항등을위한의무사항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18.

보령시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기타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와 낙시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 “낙시어선업자” 라 한다) 및 그 어선과 낙시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 이라한다)의 영업시간은 일출 전 30분 ~ 일몰 후 30분까지(기상관측소 기준) 단,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검사된 낙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4월 1일~10월31일) 04:00~20:00까지 , 동절기(11월 1일~익년 3월31일) 05:00~19:00까지로 하며, 다른 법령에 항해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항회수)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낙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하계(4월1일 ~10월 31일) 1일 2회까지, 동계(11월1일~익년3월31일) 1일 1회로 한다. 단, 1회 낙시승객을 낙시장소에 안내하여 낙시승객이 낙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 차 승객 수는 1:2회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영업구역등) ①낙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낙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낙시어선의 선상에서 낙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원자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항에서 서단으로 10마일을 벗어난 구역

②낙시어선업자는 보령시 연안의 유인도서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보령시 연안의 모든 도서,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낙시어선의 승객을 안내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용섬

2.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불모도

3.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대화사도

4.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소화사도

③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의 승객을 승선시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장소에 안내하는 때에는 낙시승객에 대하여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낙시어선의 승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6조(낙시어선의 승객 준수사항) ①낙시승객은 승선할 낙시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낙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낙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낙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안전운항 등을 방해하는 행위

4. 절벽과 위험한 갯바위 장소 등에 하선 또는 낙시를 하는 행위

5.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제한구역에 하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7.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 관계법령에 포획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물고기는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8. 낙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낙시어선업자 준수사항)①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낙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선주·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시켜야 한다.
- ②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영업통제구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출입항 신고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낙시어선업자는 반드시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고, 안전점검 및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낙시어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낙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 충돌, 좌초 기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보고 후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구명조끼는 선실 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며 구명조끼 착용 법을 출항 전 교육하여야 하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⑧낙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⑨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 준수사항 고시(보령시 고시 제2006-064호, 고시 제2008-053호, 고시 제2013-052호, 고시 제2015-239호)는 폐지한다.